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의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09 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유의동·정진석·윤희숙

金炳旭・김희국・홍기원

강대식 • 권은희 • 김기현

권성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3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원한 자금으로 평택시 등에마을회관, 공동창고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.

그러나, 이러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어 지역주민들이 이를 관리·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음.

이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예외를 두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해당 시설 이용상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(안 제3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) ①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,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마을회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u> <신 설></u> | 제33조의2(마을 공동이용시설의 |
| | 무상 양여) ① 제33조제7항에 |
| | 따라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 |
| | 회관,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 |
| | 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|
| |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|
| |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|
| | 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 |
| | 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 |
| | <u>다.</u> |
| |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 |
| | 회 등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|
| | 따라 취득한 마을회관 등 부동 |
| | 산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|
| |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 |
| | 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 |
| | <u>는 아니 된다.</u> |